

[사 건 명] 행심 2018 - 4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8. 6.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6. 11.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8. 7.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해학생에도 해당한다는 사실과 가해학생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학폭위에 참석해서 피해학생으로서만 진술한 것이고,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전담기구에 의한 청구인과 관련학생 보호자들의 의견 청취나 면담, 사안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전담기구 안내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관련학생의 폭행을 유발하도록 한 것처럼 위원들에게 예단을 주어서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다. 청구인과 ○○○은 오랜 친구 사이로 청구인이 부른 별명은 평상시 친구들끼리 서로 부르는 별명이고, ○○○ 학생이 평상시 청구인에게 별명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거나, 보호자나 담임선생님께 힘들다거나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한 적도 없는 만큼, ○○○ 학생에게 정신적·신체

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한 행위는 학폭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어서, 처분의 사유 자체가 부존재 한다.

라. 청구인은 1회성 놀림에 대해 즉시 ○○○에게 사과하였으며, 이후 화해를 통하여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한 점, 청구인은 바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의 보호자도 청구인의 언어폭력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게 일방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관련학생으로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이고, 학폭위 참석 안내문 사건개요에도 청구인이 관련학생을 놀렸던 내용을 명시하여, 사안의 원인이 청구인의 놀림 행동이었다는 것을 청구인도 인지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게 ○○○ 학생이 청구인을 때린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청구인이 어떻게 놀렸는지,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았을지 등 가해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나. 전담기구에서는 청구인에게 사안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서 놀리는 행위가 충분히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담임선생님을 통해 청구인과 보호자에게 놀린 행위가 사안의 원인이었음을 안내하였고,

학폭위 과정에서 손가락 욕을 한 것이 청구인이 아니라 ○○○ 학생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 사실을 주지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에게 정리하여 안내하였다.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놀림행동이 상대방 ○○○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도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과 ○○○ 학생이 사건 이후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여야 할 것은 사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행동에 대하여 선도 조치 처분을 한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청구인 진술서, ○○○ 자술서, 청구인 및 대리인의 학폭위에서의 각 진술,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과 ○○○은 ○○학교 1학년 ○반 학생으로, 청구인은 2018. 5. 30. 13:30경 교내 야외농구장에서 ○○○이 같은 반 친구들과 농구를 하는 것을 보고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이 학기 초에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와서 결과처리를 당했다’고 놀려서, ○○○이 화가 나서 쫓아오자, 청구인이 바로 사과했지만 ○○○이 순간 욕한 감정에 청구인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전통지절차결여나 의견진술기회미부여 여부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서 학폭위 참석안내를 받았을 뿐 가해학생으로서 의견진술기회가 있음을 통지 받지 못했고, 학폭위에 참석하여 피해학생으로서만 진술하고, 가해학생 입장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8. 6. 4.경 담임선생님을 통해 청구인에게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통지가 됐고, 2018. 6. 7. 청구인에게 송달된 학폭위 참석 안내문 사안개요에도 청구인이 ○○○ 학생을 놀렸던 내용을 명시되어서, 청구인이 피

해학생으로 학폭위에 참석하도록 안내된 것이 아니라 관련학생으로 참석하도록 안내된 사실이 인정되고,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게 ○○○이 청구인을 때린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청구인이 어떻게 놀렸는지,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았을지 등 가해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여, 청구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 보호자도 상대학생 ○○○의 폭력이 더 심각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잘못과 ○○○ 폭력은 비교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가해사실보다는 피해사실을 강조하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폭위 개최에 관한 사전통지절차나 학폭위에서 의견진술기회부여에 관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전담기구에서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전담기구에 의한 청구인과 관련학생 보호자들의 의견 청취나 면담, 사안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전담기구 안내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관련 학생의 폭행을 유발하도록 한 것처럼 위원들에게 예단을 주어서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주장하나,

2018. 5. 30.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한 당일 담임선생님이 청구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음을 통지했고, 2018. 5. 30. ~ 2018. 6. 1. 관련 학생인 청구인과 ○○○에 대한 진술서를 받는 등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2018. 6. 3.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후, 2018. 6. 4.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폭위 회부 사실

이 통지됐으며, 2018. 6. 7. 학폭위 참석 안내문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점에 대한 전담기구의 절차진행 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2018. 6. 7. 송달 된 학폭위 참석 안내문 사안개요에 ‘청구인도 화가 나서 중지를 세우며 욕을 함’ 이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지만, 학폭위 과정에서 위 손가락 욕 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 학생이 한 행위임이 확인되어서 학폭위 회의록 상 청구인에 대한 ‘사안보고’ 내용에서 삭제되었고, 위 사실을 주지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에게 안내해서, 학폭위 위원들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손가락 욕 부분은 제외하고 언어적 폭력부분만 가해행위로 인정해서 조치처분결정을 했음은 회의록 상 확인할 수 있는 바, 학폭위 참석 안내문 사안개요에 잘못된 기재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른 별명이나 발언한 내용은 평상시 친구들끼리 서로 부르는 별명이거나 사실 그 자체를 말한 것에 불과해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언어폭력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자체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하나,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학기 초에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와서 결과처리를 당했다’ 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이고 같은 반 친구들이 위 사실 때문에 ○○○ 별명을 ‘○똥결’ 로 붙이고 부른 것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고등학교 1학년인 ○○○ 입장에서는 위 사실은 매우 수치스러운 사실이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이 ‘○똥결’ 이란 별명을 붙이고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했을지 모르지만, 청구인이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위 사실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는 참기 힘든 모욕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청구인의 놀림이 ○○○의 폭력을 유발한 원인이었는바, 청구인의 놀림행위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여부

청구인은 1회성 놀림에 대해서 피해학생 ○○○에게 즉시 사과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화해하고 원만한 관계도 회복하였음 등을 고려할 때 친구들 간 경미한 다툼은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학폭위를 개최하여 ‘서면사과’ 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법률이고, 본 사안은 청구인이 다수의 학생이 있는 곳에서 관련학생 ○○○에 관하여 수치스러운 사실을 말함으로 ○○○ 학생의 학교폭력을 유발한 사안으로서,

학폭위는 ○○○의 신체폭력행위에 대해 적정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의 폭력을 유발한 청구인의 행동에 관해서도 적정한 조치가 무엇인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서, 심각성, 고의성은 각 1점,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청구인이 반성하고, ○○○과 화해해서 관계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0점으로 산정하여 총 2점으로 판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도 위 처분에 따라서 2018. 6. 22. ○○○에게 서면사과를 하여 조치이행을 했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4.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